의안번호	제663호
의 결	2014년 6월 일
연 월 일	(제 330 회)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4년 6월 2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63 제출연월일 : 2014년 6월 2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현행 조례 내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및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권고사항 반영과 운영상 필요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객관적인 지정기준 설정이 어려운 특정용도제한지구 삭제(안 제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특정용도제한 가능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전문성·투명성 강화(안 제8조)
 - 충청북도 소관 위원회 5개 이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위원회 3개 이내인 경우에는 위원 위촉 요건 인정
 - 연임 가능 횟수 조정 : 3회(제한없음 → 3회)
 -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 사항 개선(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9조)
 - 신속·명확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처리기한 단축조정 : 45일 이내 (기한없음 → 45일 이내)
 - 재심의 등 반복심의 횟수조정 : 3회 이내(제한없음 → 3회)
 - 심의의결방법 확대 : 재심의의결 추가
 - 회의록 공개시점 조정 : 30일 경과 후(6개월 → 30일)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도 소관 위원회 5개 이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 획위원회 3개 이내 범위인 경우에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전문분야 및 위촉위원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 위촉할 수 있다.
- ⑤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성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고려하여 위촉하고, 해당 위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12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위원회의 심의는 시장·군수의 결정 신청 또는 관련 부서의 심의 요청일 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된 기간, 신청 서류 보완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⑨ 안건의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제13조 중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부결 또는 분과위원회 위임의결"을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의의결, 부결의결, 분과위원회 위임의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6개월이 경과한 후"를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심의의결된 안건은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된 숙박시설제한지구, 위락시설제한지구 및 위촉직 위원의 임 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특정용도제한지구의 지정) 도지 사는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숙박 시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구 2. 위락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락 시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구	<삭 제>
제8조(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② (생략) <u><신 설></u>	구성)제8조(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② (현행과 같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신 설>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은 도 소관 위원회 5개 이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3개 이내 범위인 경우에만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전 문분야 및 위촉위원 부족 등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 위 촉할 수 있다.
<u><신 설></u>	⑤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성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고려하여 위촉하고, 해당 위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회의운영) ①~⑦ (생략) <u><신 설></u>	제12조(회의운영) ①~⑦ (현행과 같음) ⑧ 위원회의 심의는 시장·군수의 결정 신청 또는 관련 부서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된 기간, 신청 서류 보완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안건의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 할 수 없다.
제13조(심의의결 방법)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는 <u>원안의결, 조건</u> 부의결, 부결 또는 분과위원회 위임의결로 한다.	제13조(심의의결 방법)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는 <u>원안의결, 조</u> 건부의결, 재심의의결, 부결의결, 분과위원회 위임의결로 한다.
제19조(회의록) ① (생략)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제19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재심의의결된 안건은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발췌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1. ~ 9. 생략
 - 10.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군관 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③ ~ ④. 생략
-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 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

- 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 2. ~ 8. 생략
- ② ~ ④. 생략
-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 ② 생략

-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법 제 3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④ 생략

- 제111조(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를 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시·도의 경우에는 농림 분야 공무원 및 농림 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 1. 당해 시·도 지방의회의 의원
 - 2. 당해 시·도 및 도시·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 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 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⑧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 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 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위촉·해촉(解囑) 기준
 -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 5.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제1조 (목적)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법 제1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영 제111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도시계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영 제1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은 경제부지사, 기획 관리실장, 농정국장, 균형건설국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12조 (회의운영) ① 삭제

- ② 삭제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 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⑤ 위원은 용역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하여 찬·반 발언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 하여 심의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